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병역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신설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분장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 및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00.00~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정보기획과 및 정보관리과를”을 “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정보기획과·정보관리과 및 정보보호팀을”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전자정부구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2.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13.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14.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15. 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제20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5항 중 “제10호까지”를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7호까지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7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0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20조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0조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20조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로 한다.

제34조 중 “제18조 및 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8조에”로 한다.

제39조의2제4항 중 “제18조 및 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22조”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제18조 및 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2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16조”를 “제16조, 제18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45조제4항 단서 중 “4명”을 “5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주사보 “42”를 “4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80”을 “279”로 하고, 일반직 계 “276”을 “275”로 하며, 행정주사보 “42”를 “4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의료기술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를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주사보 “270”을 “269”로 하고, 행정서기보 “292”를 “294”로 하며, 시설서기보 “1”을 “2”로 하고, 건축운영서기보 “2”를 “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3”을 “22”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05”를 각각 “1,50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272”를 “271”로 하며, 의료기술서기 “15”를 “1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274”를 “276”으로 하며, 시설서기보 “1”을 “2”로 하고, 건축운영서기보 “2”를 “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3”을 “2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병무청 정보보호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병무청 정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104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별표 3의4의 정원 6명(행정서기보 6명) 및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1명(의료기술서기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병역자원국) ① (생략)	제7조(병역자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병역자원국에 <u>병역판정검사와 · 병역조사과 · 정보기획과 및 정보관리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u>병역판정검사와 · 병역조사과 · 정보기획과 · 정보관리과 및 정보보호팀</u> 을 -----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
③ 삭제	④ -----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u><신설></u>	<u>18. 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8. (생략)	<u>19. (현행 제18호와 같음)</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행정정보 공유 등 <u>전자정부 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u> 에 관한 사항	4. ----- <u>전자정부 구현</u> -----
5. <u>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u> 에	<u><삭제></u>

관한 사항

6. ~ 13. (생략)

⑦ (생략)

<신설>

제8조(입영동원국) ①·② (생략)

③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 14. 삭제

<신설>

15. (생략)

④ 현역모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삭제

<신설>

⑤·⑥ (생략)

제18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

6. ~ 1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입영동원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5.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판
정검사에 관한 사항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④ -----
-----.

1. ~ 8. (현행과 같음)

10. 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
사에 관한 사항

⑤·⑥ (현행과 같음)

제18조(현역입영과) -----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0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제22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

1. ~ 10. (현행과 같음)

11.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판
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2.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13.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14.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15. 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
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제20조(사회복무과)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
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
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
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
수의사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제22조(고객지원과)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7. ~ 12. (생략)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동원관리국) ① ~ ④ (생략)

⑤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현역모집과장은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 ⑨ (생략)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지무관리국) ① (생략)

② 사회복지무과장은 제20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생략)

④ 산업지원과장은 제20조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 ⑥ (생략)

제34조(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 및 제22조제4

<삭 제>

7. ~ 12. (현행과 같음)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입영동원관리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1호까지-----
-----.

⑥ -----
----- 제7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2조제3호-----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지무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0조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0조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
----- 제18조에 -----

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 ③ (생 략)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 및 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⑥ (생 략)

⑦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생 략)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 ③ (생 략)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 및 제2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⑥ (생 략)

⑦ 고객지원과장은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8조-----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1. 제22조-----

2. (현행과 같음)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8조-----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제22조-----

-----.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6조, 제18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
--.

③ ----- 제17조, 제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
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
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
의 정원 중 8급 4명은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 ⑦ (생 략)

----- 5명-----
-----.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42</u>		<u>4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4</u>		<u>13</u>	-1	
	•			•	•		
	•			•	•		

[별표 3의2]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280		279	-1	
일반직	계		276		275	-1	
행정주사보			42		43	+1	
행정서기보 · 의료기술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삭 제>	-1	
사무운영서기보			14		13	-1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

(제45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270</u>	<u>269</u>	-1
•	•	•	
•	•	•	
행정서기보	<u>292</u>	<u>294</u>	+2
•	•	•	
•	•	•	
시설서기보	<u>1</u>	<u>2</u>	+1
•	•	•	
•	•	•	
건축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3</u>	<u>22</u>	-1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병무지청공무원 정원표

(제45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505</u>		<u>1,506</u>	+1	
일반직 계			<u>1,505</u>		<u>1,506</u>	+1	
	.		.		.		
	.		.		.		
행정주사보			<u>272</u>		<u>271</u>	-1	
	.		.		.		
	.		.		.		
의료기술서기			<u>15</u>		<u>16</u>	+1	
	.		.		.		
	.		.		.		
행정서기보			<u>274</u>		<u>276</u>	+2	
	.		.		.		
	.		.		.		
시설서기보			<u>1</u>		<u>2</u>	+1	
	.		.		.		
	.		.		.		
건축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3</u>	<u>22</u>	-1